



**글** 강지남\_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본 자료 발표자** 은기수\_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장·국제대학원 교수  
 이토 펄\_캐나다 토론토대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도남희\_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문현아\_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전지원\_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이주현\_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연구원

**디자인** 케이트 스몰, 최정미

# 한국형 이주 아동돌봄 모델,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국연구학회 2021 후기학술대회 발표...저렴한 돌봄인력 확보? 교육 기회 및 일자리 안정성 제공해야

“왜 우리나라는 필리핀 이모님을 안 받아주나요?”

“홍콩에 있는 친구가 월 60만 원에 필리핀 내니 씁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족도 200만 원 넘던데...”

주로 엄마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맘스홀릭베이비’에 종종 올라오는 글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조선족을 제외한 외국인 아동돌봄노동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 돌봄을 해결하는 홍콩 등 해외 사례를 부럽게 여기곤 합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이주의 시대입니다. 각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지정학 및 기후 사정에 따라 지구촌 구성원들이 국경을 넘는 일이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도 앞으로 국경을 여는 폭을 넓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저임금을 감내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젠더 간 평등한 돌봄사회 구축과 이주 돌봄노동은 어떻게 맞물려야 할까요? 고용주 착취가 덜하고, 인권을 보호 받으며, 경력이 인정되는 일자리를 찾아 해외 이주하려는 여성들의 바람은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요?

1

2021년 11월 27일, 발표 문현아, 연구  
 참여자 은기수 은기수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장·국제대학원  
 교수, 이토 펄 캐나다 토론토대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문현아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전지원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이주현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연구원

## “필리핀 이모님, 부러워요”

### 민간 육아도우미는 영세한데...

우선 국내 육아도우미 서비스 현황을 살펴봅니다. 누군가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대리양육’ 수요는 만 2세 이하의 영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육아도우미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영아 종일제’ 이용자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5333가구에서 2018년 4538가구로 15% 가량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시간제 이용자는 5만2354가구에서 6만53가구로 역시 15% 증가했습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자 규모가 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아쉽게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육아도우미 자격증은 국가자격제도나 국가 공인 민간자격제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간이 신설하고 관리, 운영하는 민간자격증만 있습니다. 민간의 육아도우미 시스템도 부실한 형편입니다. 민간 소개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고, 이들 업체의 육아도우미 교육 프로그램도 부실합니다. 영아를 둔 부모들은 민간 육아도우미가 자격이 충분한지, 신뢰할 만한지 자신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육아도우미들의 근로 환경 역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주 아동돌봄 노동자<sup>2</sup>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의식한 요구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여성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했습니다. 돌봄 부담 감소를 통해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도 있습니다. 즉, 이주 아동돌봄노동자를 받아들여 저비용으로 양질의 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국내에는 적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203만여 명입니다(표 참조). 재외동포(F-4)가 46만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들 중 아동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숫자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외동포 및 영주 비자(F-5) 소지 외국인은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방문 취업(H-2) 소지 외국인은 특례고용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가사 부문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위 ‘필리핀 이모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현행 비자 제도에 있습니다.

이주 아동돌봄노동은 몇 가지 특성을 나타냅니다<sup>3</sup>. △가사/아동돌봄 노동의 범주 구분이 어렵고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노동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특히 입주 노동자의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권력 불균형으로 체류 여건이 불안정하며 노동 착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무지(가정)를 떠나기 힘든 제약 △인종 및 젠더 차별 △언어 장벽 및 정보 접근성 부족 △권리를 보호해 줄 조직 부족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sup>2</sup>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주 아동돌봄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sup>3</sup> ILO, 2017; Yeoh et al., 2020; Parreñas, 2017; Glenn, 1992; 손인서, 2020 등

## 최저임금 보장 못 받는 육아도우미

### 이주 육아도우미 위한 공공 시스템 만들어야

한국이 이주 아동돌봄노동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육아도우미의 자격 및 신뢰성 부족에 따른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안정되고 보호 받는 아동돌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센터는 이주 아동돌봄 노동자를 유입, 지원하는 공공 돌봄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 아동돌봄 노동자의 자격관리제도와 이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주 아동돌봄노동 도입에 앞서 이것이 왜 필요하고 누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인식과 합의 하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 아동돌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보장 등 안정되고 보호받는 노동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도우미로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

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을 갖춘 신뢰할 만한 외국인 육아도우미를 육성하고, 교육 이수와 연계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실제 근무연수에 따른 아동돌봄 경력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력 송출국과 국가간 상호협력을 맺는다면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인력을 충원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 이주 아동돌봄노동 모델을 갖추기 위해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 로드맵은 ①이주 돌봄노동 수요 조사 ②해외 사례 연구 및 시스템 디자인 개발 ③ 국가 관리 돌봄인증제 도입 ④한국형 이주 아동돌봄노동 모델 모색 등으로 단계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그림 참조).

〈표〉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

구분	2002년 (단위: 명)
계	2,036,075
재외동포(F-4)	466,682
비전문취업(E-9)	236,950
사증면제(B-1)	179,332
영주(F-5)	160,947
방문취업(H-2)	154,537
단기종합(C-3)	114,261
반문동거(F-2)	43,666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20년

〈그림〉 한국형 이주 아동돌봄노동 모델 구축 로드맵



자료 : '이주 아동돌봄 노동자의 도입과 자격인증제도 가능성에 대한 전망'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한국연구학회 2021년 후기학술대회, 2021년 11월 27일

## 외국인 육아도우미에게 고용 안정성 및 교육 제공해야

###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 가져와

이 단계들을 착실하게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음 속에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하는 3WH가 있습니다. △저출산 및 돌봄위기 극복, 안정적인 양질의 돌봄 확보를 위해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입 배경을 명확히 하고(Why) △누가 '이주 육아도우미'를 필요로 하며, 또 어느 나라로부터 이주 아동돌봄 노동자를 영입할지, 양자간 혹은 다자간으로 국가간 협력을 할지 고민하며(Who) △현재 외국인 이주자로부터 육아도우미를 충원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이주 노동자를 유입할 것인지, 돌봄 대상을 영아로 할 것인지 유아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검토해야(What) 합니다. 또 △민관 협력 형태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합니다(How).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공백 없는 돌봄, 더 나아가 좋은 돌봄에 대한 절실함이 커졌습니다. 좋은 돌봄이란 좋은 일자리,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이 결합돼야 실현 가능합니다. 한국형 이주 아동돌봄노동 모델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해나감으로써 좋은 돌봄의 기초를 다져나가기에 희망합니다.

2021 CTMS Brief No.13



www.ctms.or.kr  
ctms.snu@gmail.com  
@ctmssnu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국제대학원 140동 307호

사전승인 없이 무단배포 또는 자료 수정 및 편집은 불가하며, 본문 내용 등 활용 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2021)' 등으로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